

 광고복합체육센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성 명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FAX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연락처		
사용시설명	광고복합체육센터	빙상장()		수영장()	
경기(행사)명					
주 최/주 관					
사 용 일 시	조 기	2023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간
	주 간	2023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간
	야 간	2023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 간
예 상 인 원	명	임원 및 지도자 (진행요원)		임원 명, 안전요원	명
부속시설 사 용 료	품목	단가	수량	금액	
	전 기				
	조 명				
	전광판				
	음향시설				
	기타				
기 타	중계방송	TV 중계·녹화(), 라디오 중계·녹음()			
	상업사용	광고(), 촬영()			
사 용 료	원	납부일자	년	월	일
필 수 사 항	청소용역 계약서, 폐기물 등 처리, 주차장 주차안내자 : 동의()				
수원특례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인					
수원시체육회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용세부계획서, 체육시설 사용자 동의서, 청소 및 시설물 정리 서약서, 단체(팀)등록명단 각 1부					

체육시설 사용 세부 계획서

1. 행사 개요

- 1) 행사명 :
- 2) 일시 :
- 3) 주최 :
- 4) 주관 :
- 5) 참석인원 :

2. 세부추진계획

시 간	세부진행사항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수원시체육회장 귀하

체육시설 사용자 동의서

1.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운영의 위해 시설운영 부서의 지시 및 협조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며, 사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광교복합체육센터(수원시체육회)에 물을 수 없다.

2. 체육시설 내에서 취사 및 음식물 취식 금지

- 음식물 반입, 취사, 흡연 및 음주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 도시락 등을 불가피하게 취식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한다.

3. 원상복구의 원칙을 준수

- 시설 이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파손 또는 전손된 경우 대관한 단체 또는 개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청소 및 뒷정리는 청소 대행업체 계약서를 필히 제출한다.

- 사용 중 그리고,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한다.(쓰레기 반드시 자체 수거)

5. 주차안내자 배치

- 주차장의 혼잡해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주차안내자를 필히 배치한다.

※ 사용의 우선순위 : 사용 승인 후 동일 날짜에 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경우에 우선권은 공적인 행사에 주어지게 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단, 5일 전에 사전 통보)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상황 발생처리에 대해 관리자의 지시에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불이행시 향후 시설이용의 제한과 더불어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수원시체육회장 귀하

체육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1. 아이스링크장 시설대관 사용자는 아이스링크장에서 정한 이용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부 방침 또는 아이스링크장 시설물 보호에 필요한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한다.
3. 다음의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 나. 이용승인 조건, 이용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
 - 다. 시설대관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안전조치 등 “광교북합체육센터(수원시체육회)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기타 아이스링크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음의 경우 그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가.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 발생 시
 - 나.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다. 기타 아이스링크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경기장내에는 위험물 소지, 병류 및 주류·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6.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시설물 파손여부를 사전·사후 점검확인 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망실, 구조변경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나. 대관기간 중 사용시간에 필요한 시설물, 특수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광교북합체육센터(수원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시간 종료 후 즉시 철거한다.
 - 다. 사용자는 시설대관 받은 장소의 정상적인 유지관리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시설대관을 함에 있어 이용기간 중 소속 이용자 및 현장투입 인원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8. 시설대관 후 아이스링크장 및 주변장소의 정리정돈은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9. 아이스링크장 이용은 승인된 시간 내 정시에 시작하여 종료 10분 전에 마감한다.
10. 시설대관료는 사용기간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이용을 금지한다.
11. 사용자는 시설대관 승인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12. 사용자는 시설대관 기간동안 승인된 대관 외 추가 시설대관을 신청할 수 없다.
13. “광교북합체육센터(수원시체육회)는 제3항, 제4항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설대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4. “광교북합체육센터(수원시체육회)는 시설대관 기간 중 대관장소에 설치, 보관중인 사용자의 물품, 장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 기타 사용자 금지사항
 - 가. 사용자, 진행요원 등이 승인된 장소 이외에 출입하는 행위
 - 나. 주차장 이외의 주차행위 및 물품판매 등 일체의 상행위

- 시설대관 사용자는 이용승인을 받은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상기에 명시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광고복합체육센터 단체(팀)등록 명단

신청 팀 종목		<input type="checkbox"/> 스피드		<input type="checkbox"/> 피겨		<input type="checkbox"/> 아이스하키	
팀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부대표 성명:	
임원 및 지도자 (전원 기재)							
순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주민등록상, 동까지)	개인정보		
					동의	거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

인

